

	<h2 style="margin: 0;">신문방송국규정</h2>	규정번호	3-7-7
		제정일자	201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차수	3차
		소관부서	학생성공처 (신문방송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한 학술·언론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신문방송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신문방송국의 호출부호는 “A.B.S(Ansan Broadcasting Station)”로 한다.

제3조(위치) 신문방송국은 대학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신문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026.03.01.>
2. 대학의 방송
3. 대내·외 홍보활동
4. 기타 신문방송국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기 구

제5조(조직) 삭제 <2026.03.01.>

1. 삭제 <2026.03.01.>
2. 삭제 <2026.03.01.>

제6조(구성) ① 신문방송국의 임원 및 학생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 신문방송국장, 미디어편집간사, 미디어기술간사
2. 학생임원 : 실무국장, 부실무국장, 총무
 - 가. 삭제 <2026.03.01.>
 - 나. 삭제 <2026.03.01.>

② 삭제 <2026.03.01.>

제7조(임원의 임용 및 직무) 임원의 임용 및 직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방송국장 :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신문방송국 운영을 총괄한다.
2. 미디어편집간사 : 대학 교직원 중에서 국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신문방송국의 미디어 편집 업무와 신문방송위원회 회의 준비, 자료작성 및 회의 진행을 보조한다.
3. 미디어기술간사 : 대학 교직원 중에서 국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신문방송국의 미디어 기술 운영을 보조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문방송국장은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① 신문방송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문방송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문방송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학생국원

제10조(학생국원) 국원의 구성은 정국원과 수습국원으로 나누며, 학생임원은 정국원으로 한다.

제11조(자격) 신문방송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신문방송분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재학생
2.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제12조(학생임원의 임명) ① 실무국장은 정국원 중 적임자를 학생국원들이 선출하여 신문방송국장이 임명한다.

② 그 외 임원은 실무국장의 추천으로 신문방송국장이 임명한다.

제13조(학생임원 업무와 임기) ① 실무국장은 학생국원을 대표하며 신문방송국장의 지시에 따라 신문방송국 활동의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② 부실무국장은 실무국장을 보좌하며, 실무국장의 부재시 업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신문방송국의 제반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 ④ 학생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4조 (국원선발) ① 삭제 <2026.03.01>

② 신문방송국원은 제작부, 홍보부, 기술부, 보도기획부, 행정부로 나누어 모집하여, 총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국원선발은 각 호와 같다.

1. 수습국원 : 신문방송국이 실시하는 소정의 면접절차를 거쳐 매학기 초에 선발하며, 국원의 결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일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2. 정국원 : 3개월 이상의 수습과정을 필한 자로 실무국장이 추천하여 신문방송국장이 임명한다.

제15조(부서) 신문방송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제작부는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편성 제작(촬영, 편집 등)하여 송출하고 기록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2. 홍보부는 대학의 방송, 온라인 콘텐츠, 신문방송국 행사 등의 진행 및 대내외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3. 기술부는 방송기자재의 설비와 보수관리를 통하여 원활한 방송을 할 수 있게 기술운영과 교육을 담당한다.
4. 보도기획부는 방송국 운영 활동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미디어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및 취재를 담당한다.
5. 행정부는 신문방송국 활동의 제반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제16조(국원자격상실) 국원 중 휴학 및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의2(국원 평가 및 장학금 지급 기준) ① 신문방송국의 활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산정한다.
2. 업무기한 미준수 2회는 지각 1회로 산정한다.
3. 무단 결석 1회는 결석 2회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최종 산정된 결석 횟수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1. 결석 1회 이하 : 100% 지급
2. 결석 2회 : 80% 지급
3. 결석 3회 : 60% 지급
4. 결석 4회 이상 : 지급하지 아니한다.(0%)

[본조신설 2026.03.01.]

제4장 재 정

제17조(재정) 신문방송국의 재정은 교비, 학생 자율적 경비,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신문방송국장은 예산 및 결산서를 신문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에 따른다.

제1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